

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

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



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.

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							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								
공통서류	○	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본인	건본 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									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								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									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용도 : 아파트계약용(본인 발급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								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								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								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									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									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							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, 주민번호 전체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민모집공고일까지									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	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번호 전체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									
		○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/세대원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					
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										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	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요건 확인서	-	건본주택에 비치									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									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,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. [소득증빙서류 참조]									
	○		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<table><tr><th>해당자격</th><th>제출서류</th><th>발급처</th></tr><tr><td>근로자</td><td>• 재직증명서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</td><td>• 해당 직장 • 세무서</td></tr><tr><td>자영업자</td><td>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</td><td>• 세무서</td></tr></table>	해당자격	제출서류	발급처	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	• 해당 직장 • 세무서	자영업자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	• 세무서
	해당자격	제출서류	발급처											
	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	• 해당 직장 • 세무서											
	자영업자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	• 세무서											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당첨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 하여 발급)									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비사업자의 경우 (건본주택에 비치)									
		○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‘미혼인 자녀’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									
	○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세대원	•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•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• 발급 시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									
	○	자산입증서류	본인 및세대원	「부동산등기법」제109조의2 및 「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“부동산 소유 현황”(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),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* ‘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’ 제9조 제1항제2호 및 ‘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’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									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불가함									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									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본주택에 비치									
	○		신분증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									
	○		인장	대리인										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(2022.03.31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